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빈 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
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관리계획이 수립된 경우 일반주거지역에 한해 1단계의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였으나, 노후 · 저층주거지 정비 활성화를 위해 전용주거지역도 1단계의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하고,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2단계 이상의 상향을 허용하려는 것임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 · 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 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1호,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2호 및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종전 용도지역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1항제1호가목(1)의 제1종전용주거지역인 경우: 같은 목 (2)의 제2종전용주거지역
2. 종전 용도지역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1항제1호가목(2)의 제2종전용주거지역인 경우: 같은 호 나목 (1)의 제1종일반주거지역
5. 종전 용도지역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1항제1호나목(3)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: 같은 호 다목의 준주거지역
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의 규모, 인근 토지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용도지역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의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8조의5(소규모주택정비 관리 지역에 대한 특례) 법 제43조의 4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. <u><신 설></u>	제38조의5(소규모주택정비 관리 지역에 대한 특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<u><신 설></u>	1. 종전 용도지역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1항제1호가목 (1)의 제1종전용주거지역인 경우: 같은 목 (2)의 제2종전용주거지역
<u><신 설></u>	2. 종전 용도지역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1항제1호가목 (2)의 제2종전용주거지역인 경우: 같은 호 나목 (1)의 제1종일반주거지역
1. · 2. (생략)	3. · 4.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)
<u><신 설></u>	5. 종전 용도지역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1항제1호나목 (3)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인

<신 설>

경우: 같은 호 다목의 준주거
지역
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
구하고 주택공급의 규모, 인근
토지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할
때 용도지역을 달리 정할 필요
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
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
는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
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른
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
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
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1
항제1호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
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어느 하
나의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달리
정할 수 있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944